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 수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'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'가 (일반흉부수술우수 학술지 논문)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상의명칭)

본 상의 명칭은 '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' 이라고 칭한다.

제3조 (상의 성격)

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전년도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해 수상한다.

제4조 (수상인원)

매년 1명을 수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수상자 자격 및 조건

1968

제5조 (수상자 자격)

- 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수상 자격을 제한한다.
- 2.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.

제6조 (수상 대상 선정)
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 중 전년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일반흉부수술 분야 우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흉부외과가 개설된 병원의 과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한다. 우수 학술지 심사 평가는 SCI(E) 등재 논문이면서

제 3 장 수상자 선정

제7조 (심사 위원회 구성)

- 1. 이차에 걸쳐 심사한다. 일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이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상 임이사들로 구성한다.
- 2. 일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이 그리고 이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장 이 각각 심사위원장을 겸한다.
- 3. 심사위원이 수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.

제8조 (수상자 결정)

- 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소정의 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2.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상의 수여

1968

제9조 (상금 및 상의 수여)

- 1. 상패 및 상금은 연구기금 250만원을 수여한다.
- 2. 상패 및 상금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이 수여한다.

제10조 (시상일 및 장소)

상의 시상은 매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총회에서 시상한다.

제11조 (기금관리)

1. 기금관리는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.

2. 기금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

부 칙

- 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 상임이사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
- 나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.

